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4. 22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4. 2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1997. 5. 2.

○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총무위원회 제6차회의(97. 5. 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김동언)

가. 제안이유

- 시·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실에 2개 신설과 음식물쓰레기처리 등 업무량의 증가로 청소과에 1계를 각각 신설하고자 96. 12. 26일 도에 기구·정원을 승인 신청하여
- 경기도 자치 12200-1003(97.4.11.)호로 감사관련 기구·정원이 승인되고
- 부천시음부즈만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음부즈만관련 기구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조례개정

나. 주요골자

- 시·구의 감사기능 일원화에 따른 3개구청 감사계 폐지(상계조정)
 - 시본청 감사담당관실→2개 신설(재정감사계, 기술감사계)
 - 청소사업소 청소과→1개 신설(폐기물관리계)
 - ※ 감사계→행정감사계로 명칭변경
- 계 업무분장 내역
 - 재정감사계 : 재정 및 회계분야
 - 기술감사계 : 기술분야 일상감사
- 부시장 직속기구로 음부즈만계 신설(안 제4조)
 - 시민이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
 - 시정감시·비위의 시정 및 제도의 개선권고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폐기물관리제는 청소과보다는 재활용과에 있어야 업무량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?	○ 기능상 청소과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속을 두었습니다만 시행해 보고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.
○ 구청 감사계를 폐지한 배경은?	○ 지난번 적제개편 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검토결과 폐지하고 본청에 두게 되었습니다.
○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 중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, 단체, 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?	○ 여러 법규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○ 읍부즈만 분장사무 중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을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까?	○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

4. 토론요지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

의안번호	제252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7. 5. 6.
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읍부즈만계의 분장사무를 추가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읍부즈만의 조사 및 처리 범위를 넓혀주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읍부즈만의 임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4조제3항제1호 “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·단체·기관” 다음에 “개인”을 추가로 삽입하여 수정함.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,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, 단체, 기관, 개인이 행한 행위로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4조(감사담당관실) ①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둔다.</u></p> <p><u>②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자체 행정감사업무 전반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</u></p> <p><u>2. 조사, 감찰업무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</u></p>	<p><u>제4조(감사담당관실 및 읍부즈만계) ① 감사 및 읍부즈만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 및 읍부즈만계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자체 행정감사업무 전반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</u></p> <p><u>2. 조사, 감찰업무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</u></p> <p><u>③ 읍부즈만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,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, 단체, 기관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</u></p> <p><u>2. 시정감시·비위의 시정 및 제도의 개선 권고</u></p>	<p><u>제4조(감사담당관실 및 읍부즈만계) ①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<u>②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<u>③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<u>1.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,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, 단체, 기관, 개인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</u></p> <p><u>2.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감사담당관실 및 읍부즈만계) ① 감사 및 읍부즈만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 및 읍부즈만계를 둔다.

②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자체 행정감사업무 전반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
- 2. 조사, 감찰업무 및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

③ 읍부즈만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시민이 시와 소속기관,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, 단체, 기관, 개인이 행한 행위로 고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
- 2. 시정감시, 비위의 시정 및 제도의 개선권고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